

해외보증 확대를 위한 업무제휴 시행협약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해외건설협회

본 업무제휴 협약서는 해외건설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세부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협약원칙)

- ① "갑"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정보, 정책, 제도, 홍보 방안 등을 "을"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각종 해외건설 관련 정보 및 정책지원을 활용하여 해외 건설 보증지원 확대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 (해외건설 관련 정보제공 및 보증지원)

- ① "갑"은 "갑"이 보유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 해외건설관련 각종 수주·발주 정보를 전산매체, 간행물 등의 형태로 "을"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 ② "갑"은 해외건설추진법에 따른 "갑"의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을"이 해외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지원 한다.
- ③ "갑"은 "을"이 보증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원사, 해외보증 유관기관(정책금융기관 등)과의 업무연계 등을 통해 보증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3조 (해외지부 활용)

- ① "을"은 "갑"이 운영하는 해외지부에 해당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을"은 "갑"의 의사결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외지부 파견예정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해외지부 활용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갑"은 최대한 호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제4조 (해외 홍보활동 참여)

- ① "갑"은 "갑"이 주관·시행하는 아래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협력한다.
 1. 해외발주처 및 금융기관 홍보를 위한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2. 해외 주요 발주처 초청 설명회(GICC)
 3. 해외진출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4. 기타 "갑" 이 추진하는 각종 홍보활동 및 행사
- ② "을"은 제①항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해외보증 확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한다.

제5조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제도)

- ① "을"은 해외보증 심사를 위해 "갑"이 운영하는 해외공사 사업성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해외공사 사업성분석을 "갑"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증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갑"은 사업성평가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을"에게 연간 3회에 한하여 사업성평가 수수료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제6조 (정책개발·지원 사업 등 공동 참여)

- ① "갑"은 해외보증·금융지원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을"에게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며, 참여키로 결정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제7조 (교육프로그램 활용)

- ① "갑"이 운영중인 해외건설 교육프로그램중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비용으로 각각 3명 이내의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6회에 걸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을"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건설 관련 "갑"의 임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갑"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제8조 (특별회비) "을"은 "갑"이 지원하는 해외건설 관련 각종 수수료정보, 정책, 제도, 홍보방안 등을 활용하는 대가로 "갑"에게 아래와 같이 특별회비를 매년 납부하기로 한다.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납부 금액 | 80,000,000원 연2회 (반기납) | 연간납부기준 2017년 |
| 납부 주기 | - 1회 : 협약 체결시(해당월 말일) - 2회 : 협약 개시후 6개월 경과시(7개월차 말일) | 갱신분부터 적용 |

제9조 (협조사항)

- ① "갑"과 "을"은 이 협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 (협약의 효력 및 자동갱신) 이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제12조(협약의 해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추가협약의 체결)

- ① "갑"과 "을"은 이 협약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기로 한다.
- ② 제①항에 의한 추가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협약과 추가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협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이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 ① 기타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협약은 2018년 7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2018년 7월 18일

"갑"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해 외 건 설 협 회
회 장 박 기 풍



"을"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택

